

제2550호
2017. 11. 22.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류 용 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7-109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2
제2017-110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3
제2017-111호 : 세운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4
● 주식회사 센트럴디벨롭먼트, 에나에스테이트 주식회사 고시	
제2017-01호 :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고시	20
● 공 고	
제2017-808호 :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3
제2017-809호 : 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29
제2017-811호 :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자정(안) 재공람 공고	30
제2017-812호 :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공고	34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09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53-42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다길 23	2017.11.22	동호로11다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36-2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8길 6	2017.11.22	마른내로8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마른내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10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90길 56-7	2017.11.22.	건물철거
2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63-3	2017.11.22.	건물말소
3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가길 11	2017.11.22.	건물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11호

세운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 세운6-3-3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 처리하고, 같은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2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3-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2번지 일원/ 5,573.10㎡
4. 사업시행자
 - 성명 : 더유니스타제이차(주) 대표이사 박래영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213호(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5. 정비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변경)일로부터 54개월
6. 사업시행인가일 : 2017년 11월 17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 별첨
8. 건축계획

대지면적 (㎡)	층수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용 도	비 고
4,279.50	지하8층/ 지상20층	62,095.36	57.15	908.57	69.33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9. 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구분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무상귀속)			
	종 류	규모(㎡)	종 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정비 기반 시설	도로	741.40	녹지	1,293.70	더유니스타제이차(주)	시행자 신설, 기부채납
합계	도로	741.40	녹지	1,293.70	더유니스타제이차(주)	시행자 신설, 기부채납

10. 관계도서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3)에 비치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구분	연번	권리의 소재지	토 지						이용 상황	용도 또는 지구	건축물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지 목	면적(m ²)		이용 용도	용도 지역 또는 지구	소 유 자			용도/구조	층수/층수	연면적 (m ²)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상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수용/사용	1	을지로4가291-1	대	0.30	0.30	대	일반상업지역	더유니스타(주) 국(재무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대	일반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목조,와즙	1/1	67.44	더유니스타(주)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철거완료
수용/사용	2	을지로4가291-2	대	7.10	7.10	대	일반상업지역	더유니스타(주) 국(재무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수용/사용	3	을지로4가291-3	대	11.80	11.80	대	일반상업지역	더유니스타(주) 국(재무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수용/사용	4	을지로4가301-0	대	6.30	6.30	대	일반상업지역	더유니스타(주)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수용/사용	5	인현동2가40-0	대	6.80	6.80	대	일반상업지역	더유니스타(주)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대	일반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목조,와즙	1/2	85.95	더유니스타(주)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철거완료
수용/사	6	인현동2가45-1	대	28.70	28.70	대	일반상업지역	더유니스타(주)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대	일반상업지역	주택/목조	1/1	35.21	더유니스타(주)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철거완료

수용/사용	7	인현동2가45-2	대	26.40	26.40	대	일반상업지역	더유니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수용/사용	8	인현동2가46-0	대	86.70	86.70	대	일반상업지역	더유니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대	일반상업지역	주택/연와조,와좁	1/2	93.82	더유니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수용/사용	9	인현동2가128-3	대	44.00	44.00	대	일반상업지역	더유니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대	일반상업지역	사무실/세멘부,공개	1/2	188.42	더유니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수용/사용	10	인현동2가60-4	대	99.30	99.30	대	일반상업지역	더유니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대	일반상업지역	주택,근린생활시설/목조,와좁	1/2	97.19	더유니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수용/사용	11	인현동2가38-0	대	9.10	9.10	대	일반상업지역	더유니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대	일반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목조,와좁	1/1	42.98	더유니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철거 완료
수용/사용	12	인현동2가54-1	대	58.40	58.40	대	일반상업지역	더유니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대	일반상업지역	주택/목조,와좁	1/2	49.58	더유니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수용/사용	13	인현동2가54-3	대	55.20	55.20	대	일반상업지역	더유니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대	일반상업지역	주택,근린생활시설/목조,와좁	1/2	84.30	더유니스타㈜ 더유니스타제이차㈜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306호(역삼동, 한신인터밸리)				
수용/사용	14	인현동2가41-0	대	2.50	2.50	대	일반상업지역	더유니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대	일반상업지역	제2종근린생활시설/목	1/2	89.26	더유니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철거

사용						지역			지역	조,와죽								완료
수 용/ 사 용	15	을지로4 가290- 0	대	32.60	32.6 0	대	일반 상업 지역	더유니 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수 용/ 사 용	16	인현동2 가39-0	대	10.70	10.7 0	대	일반 상업 지역	더유니 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대	일반 상업 지역	제2종근린 생활시설/ 조,개와죽	1/2	129.60	더유니 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철거 완료
수 용/ 사 용	17	인현동2 가60-7	대	3.60	3.60	대	일반 상업 지역	더유니 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수 용/ 사 용	18	을지로4 가296- 0	대	31.00	31.0 0	대	일반 상업 지역	더유니 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대	일반 상업 지역	주택/목조,와죽	1/1	49.59	더유니 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철거 완료
수 용/ 사 용	19	을지로4 가297- 3	대	72.70	72.7 0	대	일반 상업 지역	더유니 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대	일반 상업 지역	주택/목조,와죽	1/1	46.29	더유니 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철거 완료
수 용/ 사 용	20	을지로4 가297- 7	대	1.40	1.40	대	일반 상업 지역	더유니 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수 용/ 사 용	21	인현동2 가60-1	대	88.90	88.9 0	대	일반 상업 지역	더유니 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대	일반 상업 지역	근린생활시설/ 목조,와죽	1/2	76.04	더유니 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철거 완료
수 용/ 사	22	을지로4 가288- 0	대	0.10	0.10	대	일반 상업 지역	더유니 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대	일반 상업 지역	주택/목조,도 단죽	1/1	38.68	더유니 스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철거 완료

수용/사용	23	을지로4가288-1	대	3.40	3.40	대	일반상업지역	더유니스타(주)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수용/사용	24	을지로4가288-4	대	0.70	0.70	대	일반상업지역	더유니스타(주)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수용/사용	25	을지로4가288-2	대	20.00	20.00	대	일반상업지역	더유니스타(주)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대	일반상업지역	점포/목조도단층	1/2	63.64	더유니스타(주)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철거 완료	
수용/사용	26	을지로4가288-3	대	3.00	3.00	대	일반상업지역	더유니스타(주)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수용/사용	27	을지로4가310-14	대	59.50	59.50	대	일반상업지역	장옥매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102-2104 돈암동일하이빌	대	일반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목조합석층	1/2	132.23	장옥매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102-2104 돈암동일하이빌	근저당/압류	주식회사대은/서울시중구청	대구광역시수성구수성2가118(강남영남부)/서울시중구청경로17,중구청	위반추돌
수용/사용	28	인현동1가1-10	대	29.10	29.10	대	일반상업지역	고성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40-1 아름마을엘지아파트 204-701	대	일반상업지역	주택,근린생활시설/목조도단층	1/2	204.39	고성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40-1 아름마을엘지아파트 204-701	근저당	주식회사한은	서울특별시중구세종대로9길20(태평로2가)(을지로지점)	
							고희선	서울시 서대문구 세무서2가길 23, 202호 (홍제동, 마스터							고희선	서울시 서대문구 세무서2가길 23, 202호 (홍제동, 마스터				

수용/사용	29	인현동1가1-18	대	1.70	1.70	대	일반상업지역	고성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40-1 아름마을엘지아파트 204-701	대						빌)	근저당	주식 사회 신한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을지로지점)
수용/사용	30	인현동1가1-19	대	30.70	30.70	대	일반상업지역	고성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40-1 아름마을엘지아파트 204-701	대							근저당	주식 사회 신한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을지로지점)
수용/사용	31	인현동2가47-2	대	23.10	23.10	대	일반상업지역	김기호	경기 가평군 북면 목동리 559	대	일반상업지역	제2종근린생활시설/목조,와습	1/1	18.35	김기호	경기 가평군 북면 목동리 559	근저당	주식 사회 신한 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203(센트럴시티지점)
수용/사용	32	을지로4가310-11	대	65.50	65.50	대	일반상업지역	이경숙 이태영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4, 506동 801호(야탑동, 탑마을)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21길 30(신림동)	대	일반상업지역	영업/철근콘크리트,스라브	1/3	204.36	이경숙 이태영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254, 506동 801호(야탑동, 탑마을)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21길 30(신림동)			

							이수영 이현숙	미합중국 알리바마주 오번시 크로싱웨이 1508번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50, 205동 1007호 (대치동, 한보미도 맨션)						이수영 이현숙	미합중국 알리바마주 오번시 크로싱웨이 1508번지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50, 205동 1007호 (대치동, 한보미도 맨션)				
수 용/ 사 용	33	인현동2 가47-3	대	29.80	29.8 0	대	일반 상업 지역	이동근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76번지 대우아파트 112동403호	일반 상업 지역	근린생활시설/ 스텐브릭 스라브	1/2	53.87	이동근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176번지 대우아파트 112동403호	가처분	정국 색	서울시 중구 예관동 53-5	무허 가 건축 물
수 용/ 사 용	34	을지로4 가297- 1	대	205.30	205. 30	대	일반 상업 지역	윤여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 유원서초아파트 102-1108	대	일반 상업 지역	근린생활시설, 공장/목조 ,와집	1/2	35.04	윤여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 유원서초아파트 102-1108	압류	서울별 시 중구	서울시 중구 창경로 17, 중구청 (세무1 과-73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 유원서초아파 트 102-1108	대	일반 상업 지역	근린생활시설, 공장/목조 ,와집	1/2	72.73	윤여현				
수 용/ 사 용	35	인현동2 가60-3	대	69.40	69.4 0	대	일반 상업 지역	안찬규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694 산들마을아파트 410-703	대	일반 상업 지역	근린생활시설/ 목조,와집	1/1	39.67	안찬규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694 산들마을아파트 410-703	압류	기획재 정부	세종 갈매로 477 정부세 종청사 4동, 기획재 정부(개인납 세1과- 2684)
수 용/ 사 용	36	인현동2 가54-1 1	대	108.40	108. 40	대	일반 상업 지역	김행순	미합중국 테니스주 내쉬빌시 샤롯데파크 8167	대	일반 상업 지역	주택/목조,와집	1/2	106.77	김행순	미합중국 테니스주 내쉬빌시 샤롯데파크 8167			

수 용/ 사 용	37	인현동2 가54-7	대	52.20	52.2 0	대	일반 상지 지역	김형업	서울 중구 인현동2가 54-7	대	일반 상지 지역	주택/목조,와 좁	1/1	62.05	김형업	서울 중구 인현동2가 54-7				
수 용/ 사 용	38	인현동2 가54-1 4	대	11.90	11.9 0	대	일반 상지 지역	국도관 개발(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64(을지로4가)											
수 용/ 사 용	39	을지로4 가303- 1	대	153.70	153. 70	대	일반 상지 지역	신현보 신현준 최숙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07-5 궁전빌라 102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807-5 궁전빌라 102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807-5 궁전빌라 102호	대	일반 상지 지역	점포,사무실/ 철근콘크 리트,스라 브	1/5	595.34	신현보 신현준 최숙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807-5 궁전빌라 102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807-5 궁전빌라 102호 서울 서초구 방배동 807-5 궁전빌라 102호				
수 용/ 사 용	40	을지로4 가310- 12	대	66.10	66.1 0	대	일반 상지 지역	권순화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7-7	대	일반 상지 지역	점포/목조,세 멘벽돌,와 좁,스레 좁	1/2	90.72	권순화	서울 서초구 방배동 937-7				
수 용/ 사 용	41	을지로4 가298- 0	대	115.70	115. 70	대	일반 상지 지역	김갑석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2 수정아파트 에이-708							근저당	주식 회사 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 지로2 가)		
수 용/ 사 용	42	을지로4 가300- 2	대	235.30	235. 30	대	일반 상지 지역	김갑석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2 수정아파트 에이-708	대	일반 상지 지역	영업/연와조, 샌드위치 판넬 공장/목조,샌 드위치판 넬 근린생활시설/ 목조,샌드 위치판넬	1/2 1/2 1/2	119.02 112.10 72.73	김갑석 김갑석 김갑석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2 수정아파트 에이-7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2 수정아파트 에이-7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동 32 수정아파트	근저당	주식 회사 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을 지로2 가)	

수용/사용	43	을지로4가310-13	대	52.90	52.90	대	일반상업지역	배현미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102동 904호 (한남동, 하이패리온)	대	일반상업지역	주택,근린생활시설,목조,와즙	1/2	132.23	배현미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102동 904호 (한남동, 하이패리온)	근저당	주식회사한씨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다동)
수용/사용	44	인현동2가49-1	대	67.10	67.10	대	일반상업지역	김범석 김범준	서울 중구 을지로4가 255-2 서울 중구 을지로4가 255-9	대	일반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목조,와즙	1/1	37.19	김범석 김범준	서울 중구 을지로4가 255-2 서울 중구 을지로4가 255-9			
수용/사용	45	인현동2가54-5	대	51.20	51.20	대	일반상업지역	김범준	서울 중구 을지로4가 255-9	대	일반상업지역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목매점)/목조,와즙	1/2	84.30	김범준	서울 중구 을지로4가 255-9	근저당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을지로1가)
수용/사용	46	인현동2가128-15	대	117.80	117.80	대	일반상업지역	이보란 정영희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34길79, 2동 1106호(방배동, 삼익아파트)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13, 에이동 4603호(도곡동, 대림아크로빌)	대	일반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철근콘크리트,평택개	1/3	318.06	이보란 정영희 더유니스타(주)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34길79, 2동 1106호(방배동, 삼익아파트)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30길13, 에이동 4603호(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서울시 중구 입정동 2-4			
수용/사용	47	을지로4가310-6	대	57.80	57.80	대	일반상업지역	신현순 전병준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0길 19-6(논현동)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1, 103동 1601호(신도림동, 신도림1차푸르지오)	대	일반상업지역	사무실/철근콘크리트,스라브	1/6	634.52	신현순 전병준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0길 19-6(논현동)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1, 103동 1601호(신도림동, 신도림1차푸르지오)	근저당 근저당	주식회사하나은행 주식회사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을지로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태평로2가)(을지로지점)

							전한식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11동 2801호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						전한식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11동 2801호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	근저당	주식 회사 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 로9길 20(태 평로2 가)(을 지로지 점)		
수용/ 사용	48	을지로4가310-7	대	44.60	44.60	대	일반상업지역	신현순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20길 19-6(논현동)							근저당	주식 회사 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 로9길 20(태 평로2 가)(을 지로지 점)		
								전병준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1, 103동 1601호(신도림동, 신도림1차푸르지오)							근저당	주식 회사 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 로9길 20(태 평로2 가)(을 지로지 점)		
								전한식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11동 2801호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							근저당	주식 회사 하나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 로9길 20(태 평로2 가)(을 지로지 점)		
수용/ 사용	49	을지로4가310-5	대	106.80	106.80	대	일반상업지역	조남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0,1407호(정자동, 정자아이파크)	대	일반상업지역	점포,사무실/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1/6	543.85	조남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 100,1407호(정자동, 정자아이파크)				

								조규연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72길18,301호						조규연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72길18,301호				
수 용/ 사 용	50	을지로4 가310-4	대	46.30	46.30	대	일반 상업지 역	황현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58 현대아파트 83-805	대	일반 상업지 역	영업/목조,와 좁	1/2	57.02	황현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58 현대아파트 83-805				위 반 건 축 물
수 용/ 사 용	51	을지로4 가310-2	대	459.50	459.50	대	일반 상업지 역	허인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3길 84-24,402호(방배동 방배4차 상지리츠빌)	대	일반 상업지 역	영업,음식점/ 철근콘크 리트,평온개	1/4	1264.42	허인태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3길 84-24,402호(방배동 방배4차 상지리츠빌)				
수 용/ 사 용	52	인현동2 가54-6	대	27.10	27.10	대	일반 상업지 역	최기량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54-1	대	일반 상업지 역	주택/목조,와 좁	1/1	29.75	최기량	서울시 중구 인현동2가 54-1				무 허 가 건 축 물
수 용/ 사 용	53	인현동2 가60-6	대	133.20	133.20	대	일반 상업지 역	(주)신광명	서울 중구 인현동2가 60-6	대	일반 상업지 역	점포,공장,주택/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1/4	445.01	(주)신광명	서울 중구 인현동2가 60-6				
수 용/ 사 용	54	을지로4 가302-1	대	185.80	185.80	대	일반 상업지 역	정상현 정완식 정재원 정희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42번길 2,116동 203호(마북동, 연원마을삼호벽산 아파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109동 903호(방배동, 래미안방배아트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늪언덕길 16-5, 103동 102호(별빛정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06번길	대	일반 상업지 역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1/6	1002.48	정상현 정완식 정재원 정희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42번길 2,116동 203호(마북동, 연원마을삼호벽산아 파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109동 903호(방배동, 래미안방배아트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늪언덕길 16-5, 103동 102호(별빛정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06번길				

								14, 102동 203호 (서현동, 백산오페 라하우스)								14, 102동 203호 (서현동, 백산오페 라하우스)				
수 용/ 사 용	55	을지로4 가303-3	대	0.70	0.70	대	일반 상업 지역	정상현 정완식 정재원 정희숙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 42번길 2,116동 203호(마북동, 연원마을삼호벽산 아파트)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109동 903호(방배동, 래미안방배아트힐)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늪언덕길 16-5, 103동 102호(별빛정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06번길 14, 102동 203호 (서현동, 백산오페 라하우스)											
수 용/ 사 용	56	인현동1 가1-9	대	102.50	102.50	대	일반 상업 지역	정대홍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1-9	대	일반 상업 지역	주택,근린생활 시설,점포와 점,도단점	1/2	157.85	정대홍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1-9	압류(2 건)	서울특별시 중구 청	서울시 중구 창경로 17, 중구청	
수 용/ 사 용	57	인현동2 가47-1	대	29.80	29.80	대	일반 상업 지역	한성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72번길 57, 에이동 102호(고강동, 수정빌라)	대	일반 상업 지역	근린생활시설/ 세멘트벽 스레트	1/1	31.68	한성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로72번길 57, 에이동 102호(고강동, 수정빌라)	압류(3 건)가 처분/ 근저당	민간합판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중구/무 궁/초영 방	서울시 광의동 593-15 /서울시 중구 창경로 17 중구/ 서울시 문 로 18다	무 허 가 건 築 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용		가310-34			0		상지영역	별시											
사 용	84	을지로4가302-4	대	53.60	53.60	대	일반상업지역	국(재무부)											
사 용	85	을지로4가310-17	대	29.40	29.40	대	일반상업지역	국(재무부)											
사 용	86	을지로4가310-18	대	10.60	10.60	대	일반상업지역	국(재무부)											
사 용	87	을지로4가310-23	대	5.60	5.60	대	일반상업지역	국(재무부)											
사 용	88	인현동2가54-9	대	11.60	11.60	대	일반상업지역	국(재무부)											
사 용	89	인현동2가54-10	대	6.60	6.60	대	일반상업지역	국(재무부)											
사 용	90	인현동2가54-13	대	4.60	4.60	대	일반상업지역	국(재무부)											
사 용	91	을지로4가310-19	도	262.60	98.70	도	일반상업지역	국(건설부)											
사 용	92	인현동2가54-4	도	71.70	71.70	도	일반상업지역	국(건설부)											
사 용	93	인현동2가54-8	대	2.00	2.00	대	일반상업지역	국(건설부)											
사 용	94	인현동2가60-9	도	27.10	27.10	도	일반상업지역	국(건설부)											
사 용	95	인현동2가59-2	도	9.90	3.00	도	일반상업지역	국(건설부)											
사 용	96	인현동2가60-2	도	30.30	30.30	도	일반상업지역	국(건설부)											
계				6084.80	5573.16							47동	9683.11						

● 주식회사 센트럴디벨롭먼트, 에나에스테이트 주식회사 고시 제2017-01호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09.06)로 정비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428호(1978.12.29)로 사업계획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591호(1984.10.10)로 사업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9호(2013.06.13)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정비계획) 지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4-21호(2014.03.12)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4-90호(2014.11.05)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55호(2017.07.20)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84호(2017.10.11)로 공사완료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04호(2017.11.08)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주식회사 센트럴디벨롭먼트, 에나에스테이트 주식회사 사무소(☎ 02-774-871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1월 22일

주식회사 센트럴디벨롭먼트 대표이사 최대식
에나에스테이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대식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 정비사업의 명칭 : 서소문구역 제8-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지적확정측량 결과에 의함)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38번지 일대
- 면 적 : 1,191.8㎡(대지면적 : 968.4㎡, 정비기반시설면적 : 223.4㎡)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 성 명 : 주식회사 센트럴디벨롭먼트 대표이사 최대식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길 36(서소문동)
- 2) ○ 성 명 : 에나에스테이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대식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0(서소문동)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4. 11. 05.(최초) / 2017. 11. 08.(최종 변경)

마. 공사완료 고시일 : 2017. 10. 11.(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84호)

바. 이전고시 내역

○ 사업시행면적(m²)

종 전			확 정		
대지면적		977.9	대지면적		968.4
정비기반 시설면적	도 로	221.7	정비기반 시설면적	도 로	223.4
	소 계	221.7		소 계	223.4
계		1,199.6	계		1,191.8

○ 건축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용 도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 높이(층수) : 높이 99.8m(지상23층/지하5층)

- 건축면적 : 584.43m²

- 건축연면적 : 14,134.90m²

※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별 세부내역(이전고시 대상면적) : 별첨

○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 : 주식회사 센트럴디벨롭먼트, 에나에스테이트 주식회사

- 토지

순 번	지번	지목	면적 (m ²)	소유자	이전설정되는소유권 이외의권리명세		비 고
					종목	권리자	
1	서소문동 138	대지	968.4	주식회사센트럴디벨롭먼트 ,에나에스테이트주식회사	근저 당권	신한 은행	대 지
2	서소문동 139	도로	13.9	서울시 중구	-	-	무상귀속 공공용지
3	서소문동 140	도로	209.5	”	-	-	무상귀속 공공용지
계			1,191.8				사업시행 완료면적

- 건축시설

구 분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m ²)	비 고
계	14,134.90	
토지등소유자	4,816.74	
채비지	9,318.16	
보류시설	-	

- 이전 설정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건수

권리신고(권리종류별)				
계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압류
4	4	-	-	-

아. 관련서류 열람장소 : 사업시행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02-774-8712)

별첨 :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별 세부내역(이전고시 대상면적)

연 번	소유자	종전의 토지 및 건물						비 고	분양 예정의 대지 및 건물					청산		비 고					
		지번	토지(㎡)		건물(㎡)				소유자	지번	토지(㎡)		건물(㎡)	징교부적수							
			지목	지적	구조	용도	면적				지목	대지지분	분양면적		징수		교부				
1	(주)센트럴 디벨롭먼트	서 소 문 동 120-13	대	868.40	R.C	업무시설	3,332.78		(주)센트럴 디벨롭먼트	서소문동 138	대	300.45 중74.4%	4816.74 중50%								
2	에나 에스테이트(주)	서소문동 58-25	대	209.50					에나 에스테이트(주)			300.45 중25.6%	4816.74 중50%								
소 계				1,077.90			3,332.78		환지 소계			-	-								
3	서울특별시	서소문동 72-6	대	99.70					체비지	서소문동 120-13	대	667.95	9,318.16								
	재무부	서 소 문 동 120-51	대	9.80					서소문동 139	도	13.90										
		서 소 문 동 120-31	대	4.30					서소문동 140	도	209.50										
		서 소 문 동 120-40	대	7.90																	
소 계				121.70																	
계				1,199.60																	
확정예정측량으로 인한 면적정정				1,191.80																	
													소 계					223.40			
총 계				1,191.80			3,332.78		총 계			1,191.80	14,134.90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808호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 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조상품 판매, 대리영업 등 허가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노점살명제 정착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허가 연장제한 기준 명시

- 제10조에 따른 동일한 위반행위로 허가기간 내 3회 위반 시
- 제10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허가기간 내 총 5회 위반 시 또는 누적벌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

나. 판매금지 품목 판매 및 제3자 영업행위 행정처분 강화

- 허가취소 단계 1회 단축(기존 4회 ⇒ 3회)
- 단, 위조상품 등 판매금지 품목 판매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1회 위반 시 허가취소

다.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반복위반 시 처분기준 강화

-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

3. 의견제출

가.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가로환경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여관동), 문의전화:3396-6052, FAX:3396-8832, 메일:ikh126@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중구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점용허가 연장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연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단,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직계가족 중 1인이 전 운영자의 잔여기간 내에서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에 따른 동일한 위반행위로 허가기간 내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행정처분 횟수가 허가기간 내 총 5회 이상이거나 누적벌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
4. 공익목적 등 도로점용허가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행자의 불편해소 및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2호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제11조 제4호 중 “제1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제1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연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단,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물품판매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1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연장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거리가게 위반행위 조치기준

위 반 행 위	관련 규정	위반횟수			벌점
		1회	2회	3회	
1. 허가된 점용장소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과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제10조 제13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30
2. 판매대 외 제3조2호에서 정의한 도로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3. 임의로 판매대 규격을 확장 및 변경하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4.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된 사람 외에 제3자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시정명령	<u>영업정지 15일</u>	<u>허가취소</u>	
5. 제7조에서 판매 금지한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시정명령	<u>영업정지1 5일</u>	<u>허가취소</u>	
6. 판매대 종류에 반하는 물품을 취급·판매하는 행위 (먹거리류, 잡화류(공산품류), 취급 품목 미준수)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3 0일	
7. 위생 상태가 불량한 음식물을 판매하여 관련기관 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0일	
8.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시정명령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9. 그 밖에 본 운영규정에서 정한 의무 위반이나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대 내에 운영자 증명서를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제13조	시정명령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5일	10
2. 위생청결 유지 등 위반		시정명령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5일	
3. 판매대 벽면 등 외부에 승인받지 아니한 포스터,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5일	
4. 판매대 관리상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배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5. 기타 「판매대 관리 등 운영자의 의무」 미준수		시정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7항에 따른 구청측 요구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4. 제17조 제2항에 해당되는 자 5. 누적벌점이 연120점 이상인 경우 6. 판매대를 대부목적 및 점용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8. <u>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물품 판매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u>	제11조				취소

※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및 벌점을 병과하여 처분함
(위반횟수 및 누적 벌점은 도로점용 허가가 갱신될 경우 연도와 관계없이 365일을 기준으로 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점용허가 연장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연장을 제한 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 조건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때 2. 공익목적 등 도로점용허가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행자의 불편해소 및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점용허가 연장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연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 단,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직계가족 중 1인이 전 운영자의 잔여기간 내에서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에 따른 동일한 위반행위로 허가기간 내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0조에 따른 행정처분 횟수가 허가기간 내 총 5회 이상이거나 누적벌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 4. 공익목적 등 도로점용허가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행자의 불편해소 및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행위의 금지)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3. ~ 4. (생략) 5. (생략) 6. ~ 8. (생략) ② (생략) <신설>	제10조(행위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 제2호와 같음) 2. (현행 제5호와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5. (현행 제1호와 같음) 6.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제11조(점용허가 취소) (생략) 1. ~ 3. (생략) 4. 제10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연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신설>	제11조(점용허가 취소)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연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연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단,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물품 판매로 벌금 이상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1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로 한다.</u>			
<u>5.</u> (생략)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u>6.</u> (생략)				<u>7.</u> (현행 제6호와 같음)			
<u>7.</u> (생략)				<u>8.</u> (현행 제7호와 같음)			
별표	1.	거리가게	위반행위	조치기준	별표	1.	거리가게 위반행위 조치기준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위 반 행 위	관련 규정	위반횟수			벌점	위 반 행 위	관련 규정	위반횟수			벌점
		1회	2회	3회				1회	2회	3회	
1. 허가된 점용장소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과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제10조 제13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30	1. 허가된 점용장소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과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제10조 제13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30
2. 판매대 외 제3조2호에서 정의한 도로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30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30일		
3. 임의로 판매대 규격을 확장 및 변경하거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4.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 된 사람 외에 제3자나 종업원 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5일	허가 취소		
5. 제7조에서 판매 금지한 품 목을 취급하는 행위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5일	허가 취소		
6. 판매대 종류에 반하는 물품을 취급 판매하는 행위(먹거리류, 집화 류(공산품류), 취급 품목 미준수)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30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30일		
7. 위생 상태가 불량한 음식물 을 판매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30일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영업 정지 30일		
8.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폐점하는 행위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20일		
9. 그 밖에 본 운영규정에서 정한 의무 위반이나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1.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판 매대 내에 운영자 증명서를 게 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제13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5일	10	1.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판 매대 내에 운영자 증명서를 게 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제13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5일	10
2. 위생청결 유지 등 위반		시정 명령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5일		시정 명령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5일		
3. 판매대 벽면 등 외부에 승인 받지 아니한 포스터,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5일		시정 명령		영업 정지 3일	영업 정지 5일		
4. 판매대 관리상 하자로 타 인에게 손해배상 조치를 취하 지 않는 경우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5. 기타 「판매대 관리 등 운영 자의 의무」 미준수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시정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0일		
1.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 보로 제공하는 경우	제11조				취소	1. 제3자에게 전매·전대 또는 담 보로 제공하는 경우	제11조				취소
2.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7항에 따른 구청측 요구 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3. 제12조제7항에 따른 구청측 요구 사항을 거부하는 경우					
4. 제17조 제2항에 해당되는 자						4. 제17조 제2항에 해당되는 자					
5. 누적벌점이 연120점 이상 인 경우						5. 누적벌점이 연120점 이상 인 경우					
6. 판매대를 대부목적 및 점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판매대를 대부목적 및 점용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 지 기간 중 영업						7.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 지 기간 중 영업					
						8.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된 물품 판매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 809호

중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중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1. 22.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가. 부의 안건 :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계획안 2건, 예산안 1건

구분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연락처)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3396-4513)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총무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3396-4603)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과 (3396-4603)
조례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3396-4932)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과 (3396-5624)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건축과 (3396-5834)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디자인과 (3396-5962)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디자인과 (3396-5976)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치수과 (3396-6182)
동의안	중구 장애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과 (3396-5372)
계획안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 (3396-5012)
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예산과 (3396-4912)
예산안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기획예산과 (3396-4913)

나. 기 타

- 상세한 사항은 주관부서 또는 기획예산과 의회법제팀(☎3396-49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811호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재공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32호(2007.5.17.)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4-244호(2014.4.9.)로 공람 공고하였던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을 재작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재생과 ☎ 02-3396-577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

1) 정비구역의 명칭 :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2)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중구 수표동 47-1번지 일대	1,588.3	증)18.0	1,606.3	·기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32호 ·수표교 복원계획에 따른 대지경계선 변경으로 인한 구역면적 증가

3) 지정 사유

- 본 구역은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47-1번지 일대로 건설부고시 제1973-368호(1973.09.06)로 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1976-104호(1976.07.14)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32호(2007.05.17)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지역으로 도심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시설 확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 지정코자 함

나. 도시환경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 칭	면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588.3	증) 18.0	1,606.3	100.0	
대지	소계	1,421.0	감) 40.7	1,380.3	85.9	
	대지	1,421.0	감) 40.7	1,380.3	85.9	
정비기반 시설	소계	167.3	증) 58.7	226.0	14.1	
	도로	167.3	증) 58.7	226.0	14.1	

2)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구분	명 칭	면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588.3	증) 18.0	1,606.3	100.0	
상업 지역	소계	1,588.3	증) 18.0	1,606.3	100.0	
	일반상업지역	1,588.3	증) 18.0	1,606.3	100.0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	12~27 (12~14)	집산 도로	5,390 (65)	세종로광장 (수표동66-7)	고산자로 (수표동47-1)	일반 도로	청계천	서고2003-130호 (03.05.28)	
변경	중로	3	1	12~27 (12~14)	집산 도로	5,390 (65)	세종로광장 (수표동66-7)	고산자로 (수표동47-1)	일반 도로	청계천	서고2003-130호 (03.05.28)	- 선형변경 - 제12지구부담면적 : 224.2㎡ ()는 장교구역내 폭원 및 연장임
기정	중로	2	7	15	보조 간선 도로	850	을지로2가	낙원운동장	일반 도로	-	서고2005-255호 (05.08.25)	구역 외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76	수표동 50-1	수표동 65-3	일반 도로	-	서고2007-132호 (07.05.17)	
변경	소로	2	4	8	국지 도로	76	수표동 50-1	수표동 65-3	일반 도로	-	서고2007-132호 (07.05.17)	- 도로모통이 변경 - 제12지구부담면적 : 1.8㎡

주) ()는 대상지 내의 폭원 및 연장임

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 계획

구분	구역명	시행면적(㎡)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면적(㎡)			대지내 기존공공용지(㎡)	부담률 (%)
				계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기정	장교구역 제12지구	1,588.3	1,421.0	167.3	167.3	-	31.9	8.7
변경	장교구역 제12지구	1,606.3	1,380.3	226.0	226.0	-	18.0	13.1

주) 기정 대지내 기존공공용지면적(31.9㎡)은 무상양도가 아닌 유상매입하고 변경 대지내 기존공공용지면적(18㎡)은 무상양도 처리에 따라 부담률 증가

다) 정비기반시설 설치(확보) 계획

(1)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역명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정	변 경	변 경 후	
장교구역 제12지구	수 표 동	47-1	도로	-	-	80.7	중로3-1
		47-2		-	-	12.3	중로3-1
		60		-	-	1.8	소로2-4
		62-4		-	-	106.8	중로3-1
		62-5		-	-	9.9	중로3-1
		63-4		-	-	14.5	중로3-1
합계				167.3	증) 58.7	226.0	

주) 지적측량결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2)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면적(사업시행자에 무상양도)

구역명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정	변 경	변 경 후	
장교구역 제12지구	수표동	62-4	도로	31.9	감) 23.2	8.7	
		99-3		-	증) 0.5	0.5	
		99-5		-	증) 8.8	8.8	
합계				31.9	감) 13.9	18.0	

주) 지적측량결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4)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시 축	보상 후 철거	
기정	장교구역 제12지구	1,588.3	획지	1,421.0	중구 수표동 47-1번지 일대	-	-	-	-	-	-
변경	장교구역 제12지구	1,606.3	획지	1,380.3		1	-	-	1	-	-

5)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획지구분		위 치	주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 적 (㎡)						
기정	장교구역 제12지구	1,588.3	획지	1,421.0	중구 수표동 47-1번지 일대	-	-	-	-	-
변경		1,606.3	획지	1,380.3		업무	70이하	950이하	70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해당사항 없음							
심의 완화 사항	건폐율		○ 지역 특성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 저층부(5층이하, 20m이하) 70% 적용 - 고층부(6층이상, 20m이상) 60% 적용							
	용적률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 : 200% 적용							
			목적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인센티브	인센 티브량			
			친환경 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1등급(최우수)	기준등급 준수 시 100%	200% 적용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240 (kWh/㎡·y)미만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1%이상(비주거)					
			역사 보전 (의무)	옛 길 재현	옛 길 흔적 표시	50% (옛 길 흔적 표시하되 인센티브 미적용)				
			도시 경계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계활성화 유도 용도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 시	40%				
			보행 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1층 바닥면적의 2/3 이상 설치시	30%				
			안전 방재	방재 관련시설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우수저류조, 침투형 트렌치 시설 설치	30%				
③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150%										
공공 시설	산식 = 1.3α x (기준용적률+공공기여시설 인센티브) [α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1.3 x ((226㎡-18㎡)/1,380.3㎡) x (600%+200%) = 156.7% ⇒ 150% 적용									
※ ①(600%) + ②(200%) + ③(150%) = 950%이하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북측(청계천로) : 저층부 건축한계선 3m, 고층부 건축한계선 8m ○ 동측(수표로) : 건축한계선 2m ○ 서측(소로2-4) : 건축한계선 2m							

- 다.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75)
- 마.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 바. 기타 사항은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7-812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

대상시설			해제사유	지정 등급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비 고
시 설 명	소재지	소유자 (점유자관리자)				
센츄리빌딩	중구 을지로30길 37 (오장동 44-10)	손*영 외 2명	시설물 보수·보강,정밀안전진단 결과 등급 조정 (D등급→C등급)	C	반기별 1회 정기점검 실시	